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30.)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2024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141
-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3년 11월 17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월)

2. 제출사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연대상: (재)마포문화재단
- 나. 출연의 필요성
 -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
 - 마포지역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 다. 출연금 결정: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 후 2024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결정.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5.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재)마포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出捐)에 대하여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음.
- 출연대상인 (재)마포문화재단은 2007년 마포구의 출연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 전시, 축제 사업, 문화돌봄 예술치유 사업, 구민 문화예술교육, 생활체육 진흥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출연목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개발·시행,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재단 운영을 지원하여 마포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출연의 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마포문화재단의 운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마포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은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또한,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따라서, 이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계획에 제출된 출연금(5,864,421천 원)은 별도의 예산안 심의시 문화재단의 그간의 운영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확정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기준 >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